

발의년월일 2001. 3. 13
 발 의 자 : 차 성 환 위원
 찬 성 자 : 이 해 식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발전과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'91. 7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9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도

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제도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.....
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

직	급	정원	정 원 내 용
일 반 직	1	1	지방관리관 1
	4	14	지방서기관 3,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 상당 11
	5	23	지방행정사무관 19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 3, 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
	6	33	지방행정주사 27, 지방통신주사 1, 지방전산주사 3, 지방토목주사 1,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1
	7	26	지방행정주사보 20, 지방건축주사보 1,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 1, 지방전산주사보 3, 지방사서주사보 1
	8	4	지방행정서기 3(계약직 라급 1), 지방사서서기 1
	9	2	행정(계약직) 2
	소계	103	
	별 정 직	7	6
8		9	별정직 8급 상당(의장비서 1, 편집요원 1, 속기요원 7)
9		7	별정직 9급 상당(속기요원 7)
소계		22	

직	급	정원	정 원 내 용
기 능 직	6	4	지방통신장 1, 지방전기장 1, 지방기계장 2
	7	3	지방전기장 1, 지방기계장 1, 지방사무원(워드) 1
	8	19	지방전기원 2, 지방기계원 1, 지방기계원(영사) 1, 지방운전원 1, 지방위생원(사역) 1, 지방사무원(워드) 4, 지방사무원(필기) 5, 지방방호원 3, 지방통신원 2
	9	22	지방건축원 1, 지방통신원 1, 지방기계원 1, 지방운전원 3, 지방위생원(사역) 3, 지방사무원(워드) 4, 지방사무원(필기) 6, 지방방호원 2, 지방전기원 1
	10	33	지방전기원 1, 지방기계원 또는 전기원 2, 지방사무원(워드) 11, 지방사무원(필기) 15, 지방전산원 1, 지방방호원 3
	소계	81	
총	계	206	